
강원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297회 임시회(2.17.~2.26.)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입법정책담당관실

제297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의원발의 10건

상임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1. 3. 16.)
사회문화위원회 (3)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인균 의원	수정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	수정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선 의원	원안
농림수산위원회 (1)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권순성 의원	수정
경제건설위원회 (5)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용 의원	원안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원안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대하 의원	원안
교육위원회 (1)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정유선 의원	원안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7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 공동발의 :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정유선(교육 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2)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1),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전통무예의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고, 강원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고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이하 “도” 라고 한다)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교육·홍보, 지도자 양성,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하 “진흥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본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인균 의원



원태경 의원



조형연 의원



정유선 의원



김형원 의원



최종희 의원



박상수 의원



심상화 의원



김병석 의원



나일주 의원



김경식 의원



윤석훈 의원



조성호 의원



한창수 의원



박윤미 의원



김혁동 의원



김정중 의원

■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옥외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야영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야영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상담·교육 지원 사업, 여가·문화 지원 사업, 자립·복지 지원 사업, 급식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



정유선 의원



이종주 의원

▣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 공동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양),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4)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사업,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액비유통센터의 운영 사항 및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김정중 의원



위호진 의원



조성호 의원

▣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고용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원도내 공동주택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 등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그 밖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매매 및 정비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 받을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대행자의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게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당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수료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이 일부개정 됐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남녀 모든 노동자의 평등과 안정된 노동환경 제공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대우를 초래하므로 일자리 우수기업에 부적합함을 명시했다. 또한, 우수기업 수상 후보의 자격 제한에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현행 조례상 우수기업 수상 후보의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던 불합리한 법적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 · 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GTI 국제무역 · 투자박람회는 2013년 동북아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를 위해 시작된 동북아시아 경제 · 한류 축제다. 지난해에는 박람회 기간 온라인 방문객 1728만 명, 온·오프라인 판매액 13억8000만원, 온라인 수출 계약 추진액 3000억원, 국내 판매 계약 추진액 320억원의 성과를 냈다. 강원도는 2013년 GTI 첫 개최 후, 8년 연속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주도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제무역도

시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GTI 입법은 2015년 국회에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직 구성과 운영, 시군 경비부담, 수익사업 등 안정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일부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 GTI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개최지 선정 시 “강원도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성 고려”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유력인사의 박람회 참가, 국내외 홍보를 통한 GTI 참여분위기 확산 등의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했다.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1)



지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크루즈 산업이 위축되고, 향후 전망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에 강원도 크루즈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중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강원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변경하였다.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공동발의 :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2),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학생선수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계획에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유선 의원



김준섭 의원



정수진 의원